

주요골자

- 의장단 선거(의장 1명, 부의장 1명)

【 2 】 제68회 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의년월일 : 1998. 7. 8.

제 의 자 : 의 장

제의이유

- 제68회 의회(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 및 군정보고 청취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회 기 : 1998. 7. 8 ~ 7. 11(4일간)

【 3 】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7. 3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은 오래전 하천의 지형이 바뀌면서 은현면 봉암리와 동일한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뿐 아니라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봉암리 지역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남면 한산리(2리7반) 178필지 118,835㎡를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안제2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 명칭과 관할구역중 “은현면과 남면의 관할구역을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명	리명칭	구	역	
은 현 면	용암리	용암리 일원		
	선암리	선암리 일원		
	운암리	운암리 일원		
	봉암리	봉암리 일원		
		종래 남 면 한산리 1-1번지	도로	132m'
		“ 한산리 1-2번지	대	40m'
		“ 한산리 1-3번지	답	289m'
		“ 한산리 1-4번지	잡종지	3,840m'
		“ 한산리 1-5번지	도로	603m'
		“ 한산리 2-5번지	도로	168m'
		“ 한산리 3-1번지	잡종지	640m'
		“ 한산리 3-2번지	공장용지	1,705m'
		“ 한산리 3-3번지	전	313m'
		“ 한산리 3-5번지	공장용지	608m'
		“ 한산리 4-1번지	도로	299m'
		“ 한산리 4-4번지	잡종지	1,785m'
		“ 한산리 4-5번지	잡종지	1,062m'
		“ 한산리 4-7번지	잡종지	827m'
		“ 한산리 4-8번지	공장용지	83m'
		“ 한산리 4-9번지	공장용지	25m'
		“ 한산리 5번지	공장용지	1,808m'
		“ 한산리 5-1번지	공장용지	394m'
		“ 한산리 5-2번지	전	2,699m'
		“ 한산리 5-3번지	전	1,811m'
		“ 한산리 5-4번지	대	164m'
		“ 한산리 5-5번지	잡종지	1,368m'
		“ 한산리 5-6번지	전	209m'
		“ 한산리 5-7번지	전	353m'
		“ 한산리 5-8번지	잡종지	1,844m'
		“ 한산리 5-9번지	잡종지	1,765m'
	“ 한산리 5-10번지	대	165m'	

읍·면명	리명	구	역
	중래 남	한산리 5-11번지	전 4,719m'
	"	한산리 6-4번지	공장용지 2,374m'
	"	한산리 6-5번지	잡종지 2,998m'
	"	한산리 6-6번지	잡종지 1,044m'
	"	한산리 6-7번지	공장용지 592m'
	"	한산리 6-8번지	잡종지 917m'
	"	한산리 6-9번지	잡종지 130m'
	"	한산리 6-10번지	잡종지 2,129m'
	"	한산리 6-11번지	잡종지 2,964m'
	"	한산리 6-13번지	잡종지 169m'
	"	한산리 6-14번지	잡종지 2,046m'
	"	한산리 6-15번지	잡종지 401m'
	"	한산리 6-16번지	잡종지 176m'
	"	한산리 6-17번지	잡종지 727m'
	"	한산리 6-18번지	잡종지 511m'
	"	한산리 6-19번지	잡종지 48m'
	"	한산리 6-21번지	잡종지 203m'
	"	한산리 6-22번지	잡종지 2,813m'
	"	한산리 6-24번지	잡종지 449m'
	"	한산리 6-25번지	잡종지 26m'
	"	한산리 6-26번지	잡종지 26m'
	"	한산리 6-27번지	잡종지 80m'
	"	한산리 8번지	전 6,264m'
	"	한산리 8-1번지	공장용지 4,019m'
	"	한산리 8-2번지	대 917m'
	"	한산리 8-3번지	대 13m'
	"	한산리 8-4번지	대 646m'

읍·면명	리명징	구	역
		“ 한산리 8-5번지	대 675m'
		“ 한산리 8-6번지	대 660m'
		“ 한산리 8-7번지	전 628m'
		“ 한산리 8-8번지	전 421m'
		“ 한산리 8-9번지	공장용지 709m'
		“ 한산리 8-10번지	전 139m'
		“ 한산리 8-11번지	전 259m'
		“ 한산리 8-12번지	대 590m'
		“ 한산리 8-13번지	잡종지 1,668m'
		“ 한산리 8-14번지	구거 140m'
		“ 한산리 8-15번지	전 3,437m'
		“ 한산리 8-16번지	전 452m'
		“ 한산리 8-17번지	전 771m'
		“ 한산리 8-18번지	전 6m'
		“ 한산리 11번지	공장용지 732m'
		“ 한산리 11-1번지	공장용지 69m'
		“ 한산리 11-2번지	잡종지 3,085m'
		“ 한산리 11-5번지	잡종지 1,976m'
		“ 한산리 11-6번지	잡종지 936m'
		“ 한산리 11-9번지	잡종지 1,468m'
		“ 한산리 11-10번지	공장용지 906m'
		“ 한산리 11-11번지	잡종지 979m'
		“ 한산리 11-12번지	잡종지 1,553m'
		“ 한산리 11-13번지	잡종지 2,556m'
		“ 한산리 11-15번지	잡종지 771m'
		“ 한산리 11-16번지	잡종지 770m'
		“ 한산리 11-17번지	잡종지 873m'
		“ 한산리 11-19번지	잡종지 830m'

읍·면명	리명칭	구역
		“ 한산리 11-20번지 잡종지 412m'
		“ 한산리 11-24번지 잡종지 106m'
		“ 한산리 11-25번지 잡종지 462m'
		“ 한산리 11-26번지 잡종지 2,414m'
		“ 한산리 11-27번지 잡종지 746m'
		“ 한산리 11-28번지 잡종지 598m'
		“ 한산리 11-29번지 잡종지 511m'
		“ 한산리 11-30번지 잡종지 328m'
		“ 한산리 11-31번지 잡종지 21m'
		“ 한산리 11-32번지 도로 59m'
		“ 한산리 11-33번지 도로 26m'
		“ 한산리 11-34번지 공장용지 224m'
		“ 한산리 11-35번지 도로 133m'
		“ 한산리 11-36번지 공장용지 127m'
		“ 한산리 11-37번지 잡종지 55m'
		“ 한산리 11-38번지 공장용지 41m'
		“ 한산리 11-39번지 도로 15m'
		“ 한산리 11-40번지 도로 199m'
		“ 한산리 11-41번지 도로 572m'
		“ 한산리 11-42번지 도로 14m'
		“ 한산리 11-43번지 공장용지 90m'
		“ 한산리 11-44번지 잡종지 668m'
		“ 한산리 11-45번지 잡종지 25m'
		“ 한산리 11-46번지 잡종지 82m'
		“ 한산리 11-47번지 잡종지 9m'
		“ 한산리 11-48번지 도로 41m'
		“ 한산리 11-49번지 공장용지 7m'
		“ 한산리 11-50번지 잡종지 1,135m'
		“ 한산리 11-51번지 공장용지 171m'

읍·면명	리명칭	구	역
		“	한산리 11-52번지 공장용지 215m'
		“	한산리 11-53번지 잡종지 64m'
		“	한산리 11-54번지 잡종지 18m'
		“	한산리 11-55번지 공장용지 8m'
		“	한산리 11-56번지 잡종지 5m'
		“	한산리 11-57번지 도로 46m'
		“	한산리 14번지 전 456m'
		“	한산리 14-1번지 전 1,214m'
		“	한산리 14-2번지 전 420m'
		“	한산리 14-3번지 전 601m'
		“	한산리 14-4번지 전 79m'
		“	한산리 14-5번지 전 449m'
		“	한산리 14-6번지 전 220m'
		“	한산리 14-7번지 전 181m'
		“	한산리 15-1번지 하천 386m'
		“	한산리 15-3번지 전 307m'
		“	한산리 16-1번지 하천 226m'
		“	한산리 16-3번지 하천 691m'
		“	한산리 16-4번지 전 1,940m'
		“	한산리 16-6번지 하천 80m'
		“	한산리 16-7번지 하천 19m'
		“	한산리 16-8번지 하천 403m'
		“	한산리 16-10번지 하천 84m'
		“	한산리 16-11번지 전 258m'
		“	한산리 16-13번지 잡종지 240m'
		“	한산리 17-5번지 전 233m'
		“	한산리 18-4번지 하천 534m'
		“	한산리 282-6번지 공장용지 11m'

읍·면명	리명칭	구	역
		한산리 282-10번지	도로 98m'
		한산리 284번지	잡종지 126m'
		한산리 284-1번지	잡종지 92m'
		한산리 285-5번지	전 630m'
		한산리 285-6번지	전 36m'
		한산리 287-3번지	하천 53m'
		한산리 317-6번지	하천 54m'
		한산리 317-7번지	공장용지 498m'
		한산리 317-37번지	공장용지 21m'
		한산리 317-39번지	도로 95m'
		한산리 317-42번지	하천 1,759m'
		한산리 317-43번지	하천 473m'
		한산리 317-44번지	하천 109m'
		한산리 324-7번지	하천 378m'
		한산리 324-10번지	하천 74m'
		한산리 324-12번지	하천 5m'
		한산리 324-14번지	하천 139m'
		한산리 324-15번지	도로 99m'
		한산리 325-5번지	하천 200m'
		한산리 325-7번지	하천 307m'
		한산리 325-8번지	도로 128m'
		한산리 325-9번지	하천 25m'
		한산리 325-10번지	도로 148m'
		한산리 325-11번지	도로 114m'
		한산리 326번지	잡종지 846m'
		한산리 326-1번지	공장용지 155m'
		한산리 326-2번지	잡종지 146m'
		한산리 327-5번지	하천 604m'
		한산리 328번지	묘지 79m'
		한산리 329-1번지	도로 23m'

資 料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3조
- 면간경계변경 계획도
- 면간경계변경 승인서(경기도지사)
-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학구조정 검토(동두천교육청)

第2章 地方自治

第1節 通則

●地方自治法(1988.4.6) 法律第4004號全文改正

改正	1989.12.30	法律第4162號
	1990.12.31	法律第4310號
	1991.5.23	法律第4367號
	1991.12.31	法律第4464號
	1994.3.16	法律第4741號
	1994.12.20	法律第4789號
	1995.1.5	法律第4877號
	1995.8.4	法律第4959號
	1995.12.29	法律第5069號(教育法)

第1章 總綱

第1節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關係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 도모하며 地方의 均衡적 발전과 大韓民國의 民主的 발전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89.12.30)

第2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 ①地方自治團體는 大別하여 다음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4.12.20>

1.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
2. 市와 郡 및 區

②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안의 區에 한하며,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③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외에 특정한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

④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域市 또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안에 둔다. <改正 94.12.20>

③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萬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 <改正 94.12.20>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94·12·20>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중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④리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基準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리를 2개이상의 洞·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리를 하나의 洞·리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里(“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리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5條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管轄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 <改正 94·12·20>

第6條 (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있어서는 그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改正 94·12·

(추 62)

20>

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7條 (市·군의 設置基準등)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 <改正 95·8·4>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
2.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
3. 人口 2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이상인 郡.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萬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군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미만인 경우에도 郡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
2. 군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個面

④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그 地域을 管轄하는 道議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市·군의 設置에 의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권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律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 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
 -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운영·管理
 - 다. 傘下 行政機關의 組織管理
 - 라. 傘下 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監督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안부처 : 행정자치부

1982	12	11	대통령령	10955호	호
1982	12	31	대통령령	11015호	호
1983	4	12	대통령령	11099호	호
1983	4	30	대통령령	11120호	호
1983	6	10	대통령령	11143호	호
1983	7	9	대통령령	11167호	호
1983	7	26	대통령령	11182호	호
1983	8	3	대통령령	11184호	호
1983	8	30	대통령령	11214호	호
1983	8	31	대통령령	11218호	호
1983	12	31	대통령령	11317호	호
1984	2	16	대통령령	11352호	호
1984	2	28	대통령령	11365호	호
1984	2	29	대통령령	11372호	호
1984	6	30	대통령령	11456호	호
1984	8	30	대통령령	11491호	호
1984	8	30	대통령령	11492호	호
1984	11	23	대통령령	11547호	호
1984	12	8	대통령령	11554호	호
1984	12	31	대통령령	11613호	호
1985	2	27	대통령령	11646호	호
1985	6	28	대통령령	11711호	호
1985	8	12	대통령령	11737호	호
1986	3	15	대통령령	11871호	호
1986	4	26	대통령령	11890호	호
1986	5	31	대통령령	11911호	호
1986	8	18	대통령령	11954호	호
1986	12	31	대통령령	12043호	호
1987	4	10	대통령령	12138호	호
1987	4	10	대통령령	12139호	호
1987	5	23	대통령령	12168호	호
1987	7	1	대통령령	12207호	호
1987	7	1	대통령령	12212호	호
1987	8	13	대통령령	12225호	호
1987	12	5	대통령령	12291호	호
1987	12	9	대통령령	12306호	호
1987	12	15	대통령령	12315호	호
1987	12	31	대통령령	12338호	호
1988	5	28	대통령령	12457호	호
1988	6	27	대통령령	12472호	호
1988	8	16	대통령령	12505호	호
1989	8	16	대통령령	12623호	호
1989	8	15	대통령령	12725호	호
1989	9	15	대통령령	12725호	호
1989	9	5	대통령령	12799호	호
1990	1	3	대통령령	12895호	호
1990	1	3	대통령령	12899호	호
1990	1	18	대통령령	12906호	호
1990	6	21	대통령령	13024호	호
1990	7	14	대통령령	13053호	호
1990	12	18	대통령령	13134호	호
1990	12	27	대통령령	13138호	호
1991	2	1	대통령령	13232호	호
1991	2	1	대통령령	13284호	호
1991	2	18	대통령령	13308호	호
1991	4	18	대통령령	13353호	호
1991	6	19	대통령령	13390호	호
1991	7	23	대통령령	13431호	호
1991	8	24	대통령령	13454호	호
1991	12	31	대통령령	13563호	호

第4編 行政一般 第1章 行政組織一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97·12·27	대통령령 제15549호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
1997·12·27	대통령령 제1555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실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3호	(고용제주의 증화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2·19	대통령령 제15640호	(중부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8·2·24	대통령령 제15665호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2·24	대통령령 제15668호	(교과용도서예관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0호	(상업표준화법시행령)
1998·2·28	대통령령 제15693호	(여성특별위원회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732호	(보건의료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8·2·28	대통령령 제15737호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2·29>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2·29>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정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第4編 行政一般 第1章 行政組織一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⑦삭제 <84·2·29>

⑧총무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82·12·31, 84·12·31, 97·9·30>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순직확인서 또는 공상확인서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송부

⑨삭제 <93·12·6>

⑩정부청사관리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86·4·26, 91·8·24, 92·12·31, 93·12·6, 94·12·23, 97·3·20, 98·2·19>

1. 출입증·방문증의 제작승인
2. 상시출입증의 발급
3. 차량출입증의 발급
4. 청사공용시설물의 사용승인
5. 전화노선의 대여신청
6. 일반전화의 가입신청
7. 청사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승인
8. 당직사령·보좌관의 근무명령 및 변경
9. 청사관리용역업체의 지도·감독 및 신원조회
10. 일반회계중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소관 조달물품의 구입

제21조 (과학기술처소관) ①삭제 <86·4·26>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과학관장 및 대덕단지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85·2·27, 86·4·26, 87·5·23, 90·12·27>

1.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
2. 내지 4. 삭제 <86·4·26>

③삭제 <96·1·19>

제21조의2 삭제 <86·4·26>

제22조 삭제 <96·1·19>

제22조의2 삭제 <94·3·2>

제23조 삭제 <94·3·2>

제24조 (내무부소관) ①내지 ③삭제 <86·4·26>

④삭제 <91·7·23>

⑤내지 ⑨삭제 <86·4·26>

⑩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第4編 行政一般 第1章 行政組織一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게 위임한다. <개정 84·2·29, 85·2·27, 86·4·26, 88·6·27, 90·12·18, 91·4·18, 91·7·23, 91·12·31, 92·12·31, 93·12·6, 94·12·31, 95·2·24, 96·1·19, 97·3·20, 97·12·27 대통령령15549>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및 부산광역시의 4급 국가공무원인 과장상호간의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삭제 <97·3·20>
5. 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의 승급
6. 삭제 <91·7·23>
7. 삭제 <88·6·27>
8. 삭제 <97·3·20>
9. 삭제 <88·6·27>
10. 삭제 <87·4·10 대통령령12139>
1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1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13. 시청구내의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승인
14. 165계급미터미만의 행정재산(건물)에 대한 해체처분의 승인
15. 내지 18. 삭제 <87·4·10 대통령령12139>
19. 지적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사의 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지도·감독
20. 삭제 <92·12·31>
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추천
22.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허가사항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충당승인
 -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사무감독
 -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제한
 - 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처분허가

第4編 行政一般 第1章 行政組織一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국가공무원의 승진 후보자명부의 작성

24.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면·동 간의 구역변경승인

25. 삭제 <94·3·2>

26.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27. 삭제 <97·3·20>

28. 및 29. 삭제 <95·4·20>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권한

가.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내무부장관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31. 도서개발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32. 삭제 <97·3·20>

33. 민방위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민방위계획 승인

3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중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①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 5도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85·2·27, 86·4·26, 91·7·23>

1. 당해 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
2. 당해 기관의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행실시
3. 당해 기관의 소방장·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삭제 <84·2·29>

③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1·12·31, 92·12·31, 97·3·20>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11 - 2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1991. 12. 9 내무부령제547호)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4 조제 3 항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 폐치·분합,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한다)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및 설정,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7 조제 1 항제 3 호의 시설치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의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명칭변경의 승인기준)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의 명칭 변경을 승인한다.

1.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 조(경계변경의 승인기준)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승인한다.

- 도로·하천·아파트단지조성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대규모극트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경우
-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
- 교통·학군·경제권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 4 조(시가지 구성지역의 범위) 영 제 7 조제 1 항제 2 호 및 등조제 2 항제 2 호에서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3차산업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제 5 조(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 7 조제 1 항제 2 호 및 등조제 2 항제 2 호에서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라 함은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등 1차산업의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등 1차 산업과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공업·기타 도시적 산업에 주되게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 6 조(시설치의 기준) 영 제 7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이하인 시의 평균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8만을 전국시의 평균면적(제곱킬로미터)으로 나눈 수치보다 상회할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의 거주인구 및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경향에 있을 것.

제 7 조(자치구가 아닌구 및 면·등의 설치의 승인기준)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

경기도 제 98-4 호

면간 경계변경 승인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면간 경계변경을 승인함.

1998 년 5 월 27 일

경 기 도 지 사 (인)



승인내용 : 양주군 등(면)간 경계변경(178필지 118,835㎡)

경계변경 승인내역

구 분	편 입 되 는 지 역		인구 (명)	편입받는 지역
	지 역 별	면 적		
양주군	계	118,835㎡	15명	
	○ 남면 한산2리 일부	118,835㎡	15	은현면 봉암리

“책임교육 책임행정”

경기도동두천교육청

우) 483 - 020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284 - 1 / 전화 (0351) 64 - 4612 / 전송 64 - 4606 / 담당 류우량아랑

문서번호 관리 13060 - 129

시행일자 1998년 4월 20일

(경유)

발음 양주군수

참조 내무과장

선결	군수	서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4.20	결재	과장	문
	번호	1231/57			
처리과	내무과	(공람)	계장	양	
담당자	성문제		공관	류우량	

제목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학구조정 검토 결과 회신

1. 내무 13060 - 830('98. 4.13)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학구조정 검토 요청에 대하여 우리청의 의견을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불임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학구조정 검토 결과 1부. 끝.

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학구조정 검토 결과

▣ 양덕분교에 대한 폐교 및 중학교 변경 등 향후 계획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인 남면 한산리 소재 양덕분교장과 직선거리로 약500m 떨어진 은현면 봉암리에 봉암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양덕분교장은 남면중학구, 봉암초등학교는 동두천시중학군으로 중학교 진학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양덕분교장과 봉암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양덕초등학교로 승격시키고 봉암초등학교를 봉암중학교로 개편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양덕분교장 통·폐합

양덕분교장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유지 및 발전차원에서 통·폐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향후 학구내 인구 및 학생의 증가요인이 없고 교육과정 운영 및 재정 효율면에서 볼 때 통·폐합이 불가피하므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 2001년에 통·폐합할 계획임.

○ 중학교 개편(신설)

양덕분교장 및 봉암초등학교의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봉암중학교 개편시 학생수가 적어 학년별 1학급(총3학급)규모로 교육과정 운영 부실(교원 1인당 2과목 담당) 및 학교의 영세화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하고 이에 따른 교육의 질(質) 저하가 예상되며, 양덕분교장의 중학구인 남문중학교와 봉암초등학교 중학군인 동두천시중학군의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학교 개편은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귀농현상 증가 및 양주군지역 대단위 주택건설로 갑작스런 인구유입 등 추후 중학교 수용 요인 발생 시 중학교를 개편(신설)할 계획임.(표1. 2 참조)

[표 1]

- 학생현황('98학년도)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양덕분교장	1	10	1	12	1	9	1	9	1	7	1	11	6	58
봉암초등학교	1	40	1	35	1	40	1	37	1	29	1	37	6	218
계	2	50	2	47	2	49	2	46	2	36	2	48	12	276
통합할 경우	2	50	2	47	2	49	2	46	1	36	2	48	11	276

* 학생수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임

[표 2]

- 연도별 학급수 현황

학교군 중학구	학 교 명	연 도 별 학 급 수					보통교실 보유현황	비 고
		'94	'95	'96	'97	'98		
동두천시 중 학 구	중앙중	6	6	6	6	6	6	
	동두천중	15	15	14	14	13	16	
	동두천여중	15	15	15	14	13	15	
	신흥중	16	14	14	14	14	14	
	보영여중	15	14	14	13	14	14	
	소 계	67	64	63	61	60	65	
남 양 면 중 학 구	남 문 중	9	9	9	9	8	9	
합	계	76	73	72	70	68	74	

▣ 양덕분교의 통학구역으로 봉암리 지역을 복수학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 양덕분교의 통학구역(남면 한산1, 2리, 황방1, 2리 지역)을 양분교와 봉암초등학교의 통학구역으로 복수로 지정이 가능한지?

양덕분교장과 봉암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공동학구로 변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함.

- 지역주민 및 해당 학교장 의견 수렴
- 해당 읍, 면, 동장의 의견 수렴
- 해당 학교의 수용능력 및 통학 여건 등의 비교 판단
- 행정예고 실시
- 학구조정(변경) 결정

▣ 폐교 대상학교인 경우 폐교 절차는?

- 소규모학교 대책 협의회를 통한 통·폐합 기본원칙 수립
- 소규모학교 통·폐합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 추진절차, 일정, 대민홍보 계획 등
- 학부모·지역주민·동창회 등과 간담회를 통한 여론(의견) 수렴
- 행정예고 실시
- 통·폐합 결정